

## 파 주 시

수신자 하천 불법점용 행위자 귀하  
(경유)

###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처분원인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국가·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물건 적치 2. 위반내용 가. 위 치 : 위치도 참조 나. 행위내용 : 국가·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물건 적치 다. 행위상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상회복 명령(기한 : 2026. 7. 2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의견제출	기관명	파주시	부서명	하천관리과	담당자	문채혁
	제출처	주소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2층		전화번호	031-940-5063
		전자우편 주소	hyuk1027@korea.kr		팩스번호	031-940-5059
	제출기한		2026년 7월 20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파 주 시

